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기준 신설(안 제22조)
-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변경 및 방법 신설(안 제32조)
-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 계수 신설(안 제32조의2)
- 유사한 용도지구의 통 폐합 및 명칭 변경
(안 제36조, 제38조, 제41조 ~ 제53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안전처리기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1조)
- 공동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조정(안 제81조의3)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허용(안 별표 3)
-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다가구 제외)(안 별표 14)
- 농림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제조업소, 수리점 등 입지제한(안 별표 20)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허가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